

제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

의 안	
번 호	1081

제출년월일 : 2006. 6. .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(제3조)
- 지급액(제4조)
- 지급신청 및 방법(제5조)
- 지급중지(제6조)
- 환수조치(제7조)

3. 근거법령 : 붙임

- 노인복지법[법률 제7585호 : 2005. 7. 13일부개정]
- 지방자치법[법률 제7846호 : 2006. 1. 11일부개정]

4. 의안전문 :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- 첨 부 : 1. 근거법령 발췌 1부
 2. 입법예고 사본 1부
 3. 연령별 노인 인구수 및 소요예산 검토 사항 1부
 4. 타 지방자치단체 지급 사례 1부
 5. 타 자치단체의 조례(서산시) 1부

제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장수노인"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
2. "장수수당"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) ①지급 대상자는 제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

②지급 시기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로 한다

제4조(지급액)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,000원으로 한다.

제5조(지급신청 및 방법 등)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(위임장 소지자)가 신청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.

④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.

제6조(지급중지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 한때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.

제8조(대장 등 비치) 시장 및 읍·면·동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장수수당지급신청서

① 지급 대상자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전화번호	비고

② 가족상황

본인과의 관 계	성 명	생년월일	동거여부	직업

③지급계좌

- ### ○ 예금주 :

- 계좌번호 :

위와 같이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 수당을 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(지급대상자와의 관계 :)

읍·면·동장 귀하

(별지 제2호 서식)

장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 대장

(읍.면.동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지급결정일	비고

[관계 법령 발췌]

노인복지법

[일부개정, 2005.7.13, 법률 7585호]

- 제4조 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, 2006.1.11, 법률 7846호]

- 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천시 공고 제 2006 - 187 호

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06. 3. 10

제 천 시 장

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(안)

2. 제정취지

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(제3조)

나. 지급액(제4조)

다. 지급신청 및 방법(제5조)

라. 지급중지(제6조)

마. 환수조치(제7조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사항을 제천시장(참조: 복지사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사항 등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복지사업과(전화 043-640-5424 fax 640-5409)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년령별 노인 인구수 및 소요예산 검토 사항

①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

- 1인 월20,000원씩 지급할 경우

$$2,630명 \times 20,000원 \times 12월 = 631,200,000원$$

- 1인 월30,000원씩 지급 할 경우

$$2,630명 \times 30,000원 \times 12월 = 948,800,000원$$

② 8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 할 경우

- 1인 월 20,000원씩 지급할 경우

$$990명 \times 20,000원 \times 12월 = 237,600,000원$$

- 1인 월 30,000원씩 지급할 경우

$$990명 \times 30,000원 \times 12월 = 356,400,000원$$

③ 90세 이상을 지급 할 경우

- 1인 월 20,000원씩 지급할 경우

$$270명 \times 20,000원 \times 12월 = 64,800,000원$$

- 1인 월 30,000원씩 지급 할 경우

$$270명 \times 30,000원 \times 12월 = 97,200,000원$$

※ 경로연금 85세 이상 지급 현황 : 373명 16,278천 원

-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만 지급

타 지방자치단체 지급 사례

시군별	지급기준연령	지급시기	월지급액(원)	최초지급일	비고
포천시	80세이상	매분기	20,000	2006. 7. 1	
제주시	"	"	"	"	
계룡시	"	"	"	2005. 1. 1	
남해군	85세이상	"	"	2006. 1. 1	
	90세이상	"	30,000	"	
의정부시	85세이상	"	20,000	"	
천안시	"	"	"	2005. 8. 1	
서산시	"	"	"	2005. 1. 1	
공주시	"	"	"	2006. 7. 1	조례공포
순창군	90세이상	"	30,000	2006. 1. 1	
전주시	"	"	"	2006. 7. 1	조례공포
여주군	"	"	20,000	2006. 1. 1	
용인시	"	"	"	"	
수원시	80세이상	"	"	입법예고중	

※충북은 청주시만 2006.7.1일부터 83세이상 노인에게
월 30,000원씩 지급 (의원 발의 조례 제정)

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

제정 2004. 12. 30 서산시 조례 제501호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장수노인"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
2. "장수수당"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 (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) ① 지급대상자는 서산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

② 지급시기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로 한다.

제4조 (지급액)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0,000원으로 한다.

제5조 (지급신청 및 방법 등)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(위임장 소지자)가 신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.

④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.

제6조 (지급중지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